

# 2020년도 제2회 태백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0년도 제2회 태백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9. 22.

태백시 인사위원회 위원장

##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계급	직렬	직류	선발예정인원	시험과목(1.2차 시험 병합실시)		시험시간
				제1과목	제2과목	
계	4개 직렬	4개 분야	11명			
9급	의료기술	의료기술(방사선사)	1명	생물	공중보건	40분 (10:00~10:40)
	환경	일반환경	1명	환경공학개론	화학	
	시설	일반토목	6명	물리	응용역학개론	
	운전	운전	3명	사회	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	

## 2 시험방법

### □ 시험절차 및 방법



## ○ 응시제한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임용결격사유) 또는 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해당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

〈 지방공무원법 제31조 : 결격사유 〉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〈 지방공무원법 제66조 : 정년 〉

1.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2.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

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: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〉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**<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: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>**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○ 응시요건

구 분	응시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지방의료기술 (방사선사) 서기보 (9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거주지 제한 :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</li> <li>① 공고일 현재(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)부터 최종시험(면접)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폐광 4개 시군(태백시, 삼척시, 정선군, 영월군)으로 되어 있는 사람(단,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</li> <li>②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</li> <li>※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</li> <li>· 연령 : 18세 이상(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)</li> <li>· 자격요건 : 방사선사</li> </ul>

구 분	응시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<b>지방환경 (일반환경) 서기보 (9급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거주지 제한 :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</li> <li>① 공고일 현재(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)부터 최종시험(면접)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폐광 4개 시군(태백시, 삼척시, 정선군, 영월군)으로 되어 있는 사람(단,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</li> <li>②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</li> </ul> </li> <li>· 연령 : 18세 이상(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)</li> <li>· 자격요건 :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(산업기사 이상) 보유자 -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별지 1 참조</li> </ul>
<b>지방시설 (일반토목) 서기보 (9급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거주지 제한 : 아래 요건을 갖춘 자</li> <li>공고일 현재(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)부터 최종시험(면접)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 사람(단,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</li> <li>· 연령 : 18세 이상(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)</li> <li>· 자격요건 :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(산업기사 이상) 보유자 -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별지 1 참조</li> </ul>
<b>지방운전 서기보 (9급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거주지 제한 :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</li> <li>① 공고일 현재(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)부터 최종시험(면접)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태백시로 되어 있는 사람(단,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</li> <li>②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</li> </ul> </li> <li>· 연령 : 18세 이상(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)</li> <li>· 자격요건 : 제1종 운전면허(대형) 보유자 중 아래 경력요건 충족자</li> <li>· 경력요건 : 대형차량(버스, 덤프, 트레일러, 레미콘) 운전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※ 경력증빙자료 제출 필수</li> </ul>

○ 분야별 자격증 목록(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.)

직렬	직류	대상 자격증
환경	일반환경	<p>기술사 : 화공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조경, 산림, 농화학, 해양, 화공안전,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지질 및 지반, 폐기물처리, 자연환경관리, 토양환경, 방사선관리, 기상예보, 광해방지</p> <p>기사 : 화공, 조경, 산림, 식물보호, 해양환경,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응용지질, 폐기물처리, 자연생태복원, 생물분류, 토양환경, 기상, 광해방지</p> <p>산업기사 : 화공, 조경, 산림,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해양조사,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자연생태복원</p>
		<p>기능사: 조경, 산림, 환경</p>
시설	일반토목	<p>기술사 : 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지질 및 지반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</p> <p>기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응용지질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</p> <p>산업기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교통</p>
		<p>기능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석공, 전산응용토목제도, 측량</p>

직렬	직류	계급				
		5급	6급	7급	8급	9급
의료기술	의료기술					방사선사

직렬	직류	계급				
		5급	6급	7급	8급	9급
운전	운전					제1종운전면허(대형)

## 4

## 시험일정(안)

원서접수	서류전형 결과 발표 및 필기시험 실시	필기시험 결과 발표 및 면접시험 실시	최종합격자 발표
2020. 10. 5. ~ 10. 6.(2일간)	2020. 10월중	2020. 10.~11월중	2020. 11월중
응시인원 미달 시 추가공고 실시	외부 전문기관 위탁 계약체결 후	필기시험 이후 2주 이내 실시	

※ 상기 일정은 시험실시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# ○ 시험재공고
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재공고 할 수 있음.

※ 1차공고 시 동 채용분야에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자로 같음함

### ○ 추가합격자 결정

-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.

※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못하거나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3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추가합격자 결정

## 5

## 응시원서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20. 10. 5. ~ 10. 6. (2일간) 09:00~18:00 중식시간 제외

○ 접수장소 :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(☎ 033-550-2028)

○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(등기)

단, 우편(등기)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

※ 우편(등기)접수 : (26023)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21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

\*\*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편물에 동봉하여야 하며, 접수된 응시표는 이메일로 송부함

○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(태백시청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) 1부.

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(3.5cm×4.5cm) 사진 2매 부착

- 응시수수료 : 5,000원

※ 응시자는 태백시 수입증지(5,000원권) 인증 후 원서 제출(인증처 : 시청 1민원실)
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수급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
(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

②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(A4용지 2매 분량으로 워드 작성) 각1부.

③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사항 포함) 1부. \*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

④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.

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

⑥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. (필수자격증 : 전원제출, 가점자격증 : 해당자)

⑦ 경력증명서(근무처별) 각 1부. (운전직 필수, 그 외 직렬 해당자)

※ 인정범위: 경력증명서, 건강보험(자격득실확인서, 납부내역서), 고용보험 내역서

6

가산특전

○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 특전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,5%,3% 직렬별 선발인원이 4명 이상 시 적용	*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- 선발예정인원 30% 초과할 수 없음
의사상자 등	직렬별 선발인원이 10명 이상 시 적용	* 의사상자 등 가산 특전 - 선발예정인원 10% 초과할 수 없음

-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

1) 『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16조,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, 『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9조,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,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합니다.

2)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(직급/직류/임용예정기관)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3)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,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○ **공통적용 가산점** :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만점의 5% 이내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분야	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(전산직류 제외)
통신 정보 처리 분야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정보보안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 1%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.5%
사무 관리 분야	컴퓨터활용능력1급 1% 워드프로세서(1급) 컴퓨터활용능력2급 0.5%

※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특전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“자격증 소지자”에게 부여하며,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.
-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.

## 7 기타 유의사항

○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**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진출(전보)이 제한됩니다.**

○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○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

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 될 수 있습니다.

-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(시정소식/알림마당/시험정보)란에 공고(게시)하며,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PDA, MP3, 무선 호출기, 이어폰 등), 전산기기(전자수첩, 전자계산기 등) 및 수정액,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,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-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,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임용결격사유,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필기시험에서 과락(만점의 40% 미만 득점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 법규를 적용합니다.
-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부서(☎033-550-202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